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38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1명)

찬 성 자 : 유 용, 최웅식, 김광수, 권영희,
고병국, 정재웅, 강동길, 강대호,
이은주, 양민규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